

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
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9 월 30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45호

붙임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계절”을 “시기”로,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실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자는 퇴직일 전 30일,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⑬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⑭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
2. 여수시의회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

의가 예정된 자

3.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일
	자녀	1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출 산	배우자	20일 <small>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)</small>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1일
입 양	본인	20일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일

※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1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시기----- -----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<삭제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⑪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~ ⑪ (현행과 같음)</p> <p>⑫의장은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퇴직준비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정년퇴직</p>

자는 퇴직일 전 30일, 명예퇴직자는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 단, 퇴직준비휴가 시작일 전 1개월 내에는 장기재직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<신 설>

⑬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⑭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단,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
2. 여수시의회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된 자
3. 기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